제 3 0 3 회 정 례 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21년도 3/4분기

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보고

2021. 11.

감사위원회

1. 개 요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7항

"신고 접수현황에 대해 시장은 월별로, 위원회와 <u>시의회는 분기별로 보고받아야 하고</u>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보고 대상

○ 기 간: 2021. 7. 1. ~ 9. 30.(2021년 3분기)

대상: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에 온라인(시장 핫라인) 및 오프라인
(우편, 방문 등)으로 공식 접수된 공익제보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서 이첩된 공익제보

□ 접수결과

○ 2021년 3분기 총 239건 접수

[표 1] 2021년 3분기 창구별 접수현황

접 수	창 구	합 계	7월	8월	9월		
	공직자비리신고	149	45	46	58		
공 익 제 보	공 익 신 고	87	19	33	35		
지 원 센 터	부 정 청 탁	0	0	0	0		
	퇴직공무원특혜	0	0	0	0		
국민권익 위 원 회	국민신문고	3	1	2	0		
합	계	239	65	81	93		

(단위 : 거)

2. 제보경로 및 발생기관 분석

□ 제보 경로 분석

[표 2] 제보 경로별 접수현황

경로	합 계	공익제보	국민권익위원회		
		온 라 인 홈페이지/모바일	오프라인 ^{우편/방문/팩스}	국민신문고 시스템 연계/이첩	
접수건수	239 (100%)	228 (95.3%)	8 (3.3%)	3 (1.2%)	

(단위 : 거)

□ 접수 제보별 소관사무 분석

- 자치구 소관 사무 관련 제보가 139건(58.1%)으로 가장 많았음
 - 식품위생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시민 생활상의 공익신고 33건
 - 자치구 직원 복무 및 불친절 등의 공직자비리신고 등 91건
 - 기타 일반민원 등 15전
- 본청 소관 사무 제보 42건(17.5%). 본부/사업소 소관 7건(2.9%)
 - 본청의 경우 공익신고 7건, 공직자비리신고 17건, 일반민원 18건
 - 본부/사업소의 경우 공익신고 2건, 공직자비리신고 4건, 일반민원 1건
- 그 외에 시 투자출연기관 소관 제보가 34건(14.2%), 기타 17건(7.1%)
 - 시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공익신고 3건, 공직자비리신고 23건. 일반민원 8건
 - 기타 17건은 중앙 정부 등 타기관 소관 제보



^{*}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부 통합 민원 창구임

3. 공익제보 분류

□ 제보내용의 분류

○ 접수된 239건 재분류 결과, 공익제보 요건에 부합하는 제보는 180건

[표 3] 접수 공익제보 재분류 결과

총계	공익제보 해당		
	부패신고	공익신고	일반민원/기타
239 (100%)	135 (56.4%)	45 (18.8%)	59 (24.6%)

(단위 : 건)

※ 조례상 '공익제보' 해당 신고 범위

구 분	개 요	신고 대상 행위
부패 신고	부패방지법 제2조(정의) "부패행위"신고	1.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 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공익 신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정의) "공익침해행위"신고	식품위생법, 의료법, 공정거래법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정한 471개 법률 위반행위 신고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신고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공정한 직무수행(직무수행 기본자세 등),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등 서울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 위반 행위

^{*} 청원/제안/건의/항의 등 일반민원 성격 제보는 공익제보로 보기는 어려우나, 공익제보 처리에 준하여 접수 답변하고 있음

4. 공익제보 내용 분석

□ 공익제보 해당 180건 세부내역

○ 부패신고 해당 135건 세부 내용

[표 4] 재분류 결과 부패신고 해당 내용 (단위 : F					
구분	소관기관	건수	내 용		
	본 청	0			
부 정 청 탁	자 치 구	2	업무관련자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의심		
	소 계	2			
	본 청	8			
	본부·사업소	3	업무 추진 과정 중		
업 무 부 적 정	자 치 구	86	고의 또는 미숙/부주의 행위 관련		
	투자출연기관	13	(업무 부당행위 혹은 업무소홀)		
	소 계	110			
	본 청	3			
	본부 · 사업소	0	시원 나는 것이 시간하기시 본 크리웨이다.		
불 공 정 행 위	자 치 구	1	입찰이나 채용, 인사과정의 불공정행위나 정책 추진상의 특혜제공 의심		
	투자출연기관	0			
	소 계	4			
	본 청	6			
	본부 · 사업소	1	<u>소</u> 과근무/출장 부정행위, 직무 태만,		
복 무	자 치 구	2	불친절, 품위유지 위반 등		
	투자출연기관	10	행동강령 관련		
	소 계	19			
총	계	135			

^{*} 의심이나 추정하는 신고까지 포함하여 작성

○ 공익신고 해당 45건 세부 내용

[표 5] 재분류 결과 공익신고 해당 내용

구 분 조치 상황 용 건수 소관기관 내 자 치 구 8 조치1.진행중5. 공동주택관리법 입주자대표회의 관리 철저 등 해당없음1.취하2 1 투자출연 4 본 청 조치1.개선2. 진행중2. 감염병예방법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 위반 등 해당없음1.보완요구1 3 자 치 구 해당없음2,진행중3, 도 시 정 비 법 자 치 구 조합 운영 비리 등 7 직접제보안내2 자 치 구 개선1.해당없음1.취하1 지정폐기물 무단 투기 등 폐기물관리법 3 영 유 아 보 육 법 자 치 구 진행중2.보완요구1 구립어린이집 부실 운영 등 3 불법도로점용 등 두 루 번 2 자 치 구 진행중2 식 품 위 생 법 2 자 치 구 취하2 비위생적 급식시설 운용 건설산업기본법 2 투자출연 진행중1.보완요구1 불법하도급 신고 도 로 교 통 법 1 보 청 시내버스 운전중 휴대폰 영상 시청 조치 보 조 금 법 1 본 청 진행중 민간위탁기관 임의회계처리 소방시설공사법 보 청 소방시설 불법적 설치 1 진행중 옥외광고물법 자 치 구 옥외광고물 초과 설치 신고 1 진행중 의 료 법 1 자 치 구 진행중 의료행위 거부 지 방 세 기 본 법 자 치 구 취득세 등 탈세행위 1 진행중 풍속영업규제법 1 자 치 구 진행중 불법키스방 단속 요청 하 수 도 법 1 자 치 구 직접제보안내 음식물분쇄기 불법적 운용 수상레저안전법 사 업 소 공공시설 사유화 운영 1 진행중 지 방 계 약 법 사 업 소 진행중 계약과 상이한 물품납품 1 총 계 45

(단위 : 건)

^{*} 의심이나 추정하는 신고까지 포함하여 작성

5. 처리 및 조치 결과 (2021.11.1. 현재)

□ 처리 내역

[표 6] 접수제보 처리 현황

	처분 및 개선(40)		종결(90)					
총계	처분 (조치)	개선 등	해당없음	권한없음	중복 등 (증개불분, 보완와 등)	중지 (감사원 감사, 수사 재판중)	진행중	취하
239	21	19	50	14	25	1	88	21

(단위 : 건)

(단위 : 건)

- ※ 개선 등 내역: 구두경고, 주의촉구, 개선약속, 계도 및 그 외 행정지도 등 포함
- ※ 공익제보 조사 기간은 60일 이내이며, 필요 시 연장 가능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제5항

□ 처분(조치) 내역

[표 7] 공익제보 조치 결과(요구 포함)

신고구분 연번 신고 내용 처분기관 조치 내역 범칙금 부과요청. 보 청 공 익 시내버스 운전중 휴대폰 영상 시청 1 소관부서 회사통보 자 치 구 2 공 익 장애인복지시설 사적 이용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공 익 자 치 구 3 시정명령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확인 요청 부 패 감사위원회 통보 4 임기제 면접심사 부정의혹 부 자 치 구 시정명령, 고발예고 5 패 신축공사 위법 건축물 처분 요청 감리사 징계 6~18 부 패 신축공사 사용승인 업무처리 부적정(집단제보) 자 치 구 (업무정지) 19 일반민원 민원인 정보 유출 투출기관 훈계] 자 치 구 20 일반민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작성위반 시정명령 업무배제. 특별관찰 21 일반민원 지하철 안내 방송 사적 이용 투출기관 중점관리자지정(6개월)